

2017년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 공고(4차)

기업 공통의 지재권 분쟁 대응 현안에 대한 컨설팅 제공을 위해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. 8. 11.

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

1. 사업목적

- 해외 진출(준비) 중인 우리기업들이 공통의 국제 지재권 분쟁 현안 해결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에 대하여 컨설팅 전문기관을 통해 현안해결을 지원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강화

2. 신청 기간 및 대상

가. 신청 기간 : '17. 8. 11(금) ~ 8. 31(목), 21일간

나. 신청 대상 협의체

- 해외 진출(준비) 중소·중견·대기업 중 3개社 이상으로 구성된 협의체(단, 중소·중견기업은 최소 2개社 이상 포함)
 - * 대기업 :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 계열사 자산의 총 합계가 10조 이상인 기업
 - * 중견기업 :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
 - * 중소기업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

다. 컨설팅 지원내용 및 기업부담금

- (지원내용) 공동대응 전략 도출현안 등 3개분야 10개 과제 지원
 - ※ (수행기관 경쟁입찰) 기업의 지원결정 후 지원기업별 컨설팅 과제의 수행 기관을 제한경쟁입찰(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) 방식으로 선정
- (기업부담금) 협의체는 정부지원금 지급금액 기준으로 해당비용의 30%를 현물(인력투입비용)로 안분하되, 참여기업별 부담내역을 주관기관에 제출

< 지원유형별 지원과제 >

현안유형	현안별 세부 지원과제	지원한도(기간)
① 공동대응 전략 도출현안	가. 라이선스 공동협상 대응전략 나. 특허괴물 문제특허 대응전략 다. 경쟁사 문제특허 대응전략	최대 2,000만원 (최대 3개월)
② 공동 피소대응 추진현안	가. 특허보증 공동대응 나. 경고장 공동대응 다. 피소 공동대응	최대 2,500만원 (최대 3개월)
③ 공동 권리행사 추진현안	가. 공통문제특허 법적대응(공동무효·취소심판) 나. 상표브로커 공동피해 법적대응 * 공동이의신청, 공동무효심판청구 다.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공동 법적대응 * 판매자 공동 경고장 발송, 공동 민사소송 (손해배상) 등 라. 오프라인 위조상품 공동 법적대응 * 공동 침해조사·행정단속	최대 4,000만원 (최대 3개월)

< 세부 지원과제별 지원내용 >

세부 지원과제	지원내용(신청가능 예)
라이선스 공동협상 대응전략	· 해외 기업(특허폴 등)과 라이선스 체결 시, 기업들의 합리적 요율 산정을 위한 공통전략 도출이 필요한 경우 · 해외 기업(특허폴 등)과 라이선스 갱신 시, 기업들의 합리적 요율 산정을 위한 공통전략 도출이 필요한 경우
특허괴물(NPE) 문제특허 대응전략	· 동종업계 공통의 위협특허(경쟁사 보유 혹은 NPEs 보유)에 대한 대응 전략(회피, 무효, 매입 등) 마련이 필요한 경우
경쟁사 문제특허 대응전략	※ 단, 본 과제 신청 시 대응전략 도출의 대상이 되는 위협 특허는 이미 파악되어 제시가 되어야 하며, 특허분석 과정을 통한 위협특허 발굴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
특허보증 공동대응	· 협력업체에 부품, 제품 등을 납품하는 기업들이 해외 특허분쟁 위험에 대한 특허보증을 요구 받고 있는 경우
경고장 공동대응	· 해외기업으로부터 동종업계 기업들이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아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한 경우 ※ 침해 경고는 구두, 서면으로 발생한 경우 모두 가능하나, 과제 신청 시 관련 내용이 존재했음을 입증해야 함
피소 공동대응	· 해외기업으로부터 공동으로 혹은 동종업계 기업이 피소를 받아 공동대응이 필요한 경우 · 동종업계 기업들이 피소를 받아 이미 대응을 진행하고 있으나 추가대응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

세부 지원과제	지원내용(신청가능 예)
공동 문제특허 법적대응 (공동무효·취소심판)	· 특허괴물(NPE), 경쟁사 등 해외기업의 분쟁 위협특허에 대한 공동무효, 공동취소 심판 청구를 진행 할 경우
상표브로커 공동피해 법적대응	· 상표브로커의 해외 상표무단도용에 대한 등록저지, 무효화 (공동이의신청, 무효심판)를 위한 법적대응을 진행할 경우
온라인 위조상품 공동 법적대응	· 동일 판매자로 인해 해외 오픈마켓에서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사 공동의 경고장 및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경우
오프라인 위조상품 공동 법적대응	· 해외 상표, 디자인을 침해한 동일 오프라인 위조상품 판매자에 대한 권리행사(침해조사, 행정단속)가 필요한 경우

- * ① 상기 현안이외의 과제의 경우에도 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가능
 ② 상기 현안에 해당하는 과제일지라도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받을 수 없음
- ㉠ 분쟁 대상 해외기업의 소재지가 한국기업이거나 한국 국적의 개인인 경우
 - ㉡ 분쟁 대상 해외기업이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는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한국기업이 외국에 설립한 법인·지점·사무소(이하 ‘한국기업 지사’라 함) 인 경우
 - ㉢ 해외기업에 대해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신청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경우
 - ㉣ 공동대응 컨설팅 지원으로 분쟁대상 해외기업 이외에도 한국기업 또는 한국기업 지사가 실질적으로 주된 피해를 받을 경우
 - ㉤ 협의체 또는 소속 기업이 타인의 상표, 특허 또는 서비스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. 다만, 타인과 신청협의체 또는 기업 간 협력관계가 현존하고 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를 제외함
 - ㉥ 기타 지원사업이 사회적 비난 위험이 있거나 사업계획·사업수행계획서 등의 지원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

3. 신청방법 및 결과통지

가. 신청 방법

- 지재권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 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, 현물출자 확인서(별지 제1-1호 서식) 및 제반서류를 이메일(ip_care@koipa.re.kr) 또는 우편으로 접수

* 지재권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은 지원분야와 관계없이 기업 당 연간 1회만 지원

나. 심사평가 및 결과 통지

- (서류검토) 신청서 기재사항의 사실여부·하자유무와 분쟁위험성 및 공동대응 필요성 등 협의체 지원대상 여부 검토
 - * 서류심사 중 결격사유 발생 시 서류심사 중단 및 사업 신청서 반려
 - * 서류 검토 이후 협의체 선정을 위한 심사준비 안내예정(유선, 메일 등)
- (협의체 선정 심사) 협의체 분쟁위험성 및 공동대응 필요성 등 발표(PPT) 평가(선정심사 기준(첨부3) 참고)
 - * 협의체 심사결과 80점 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
 - * 80점 이상 협의체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며, 동점자 발생시 ‘분쟁위험성’ 항목 평가점수 등을 기준으로 우선대상자 선정
- (결과통지) 협의체 선정 결과 통지 : 9월 중순

< 지원절차 >

신청서 제출 (8.11 ~ 8.31)(3주)	▶ 이메일(ip_care@koipa.re.kr) 또는 우편을 통한 신청서 접수
↓	
서류검토 (9.1 ~ 9.5)	▶ 협의체 제출 서류의 사실유무, 하자유무 검토(발표일정 별도 안내)
↓	
협의체 선정 심사 (9.6 ~ 9.13)	▶ 협의체 분쟁위험성 및 공동대응 필요성 등 지원여부 심사
↓	
지원결정 통지 (9월 중순)	▶ 협의체 지원결정 통지
↓	
수행기관 경쟁입찰 및 선정 (9월 말)	▶ 협의체 참여기업-수행기관-보호원 3자간 계약 체결
↓	
공동대응 협의체 컨설팅 진행	▶ 과제수행 점검(중간·최종보고회) 및 대응전략 도출
↓	
정부지원금 지급	▶ 과제 완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▶ 과제평가 후 과제수행기관에 정부지원금 지급

※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※ 본 사업공고는 공모과제에 한정하며, 지정과제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기업 협의체 구성 후 연중 수시로 수행기관 모집(공개경쟁) 예정

※ 사업 문의

- 문의처 :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협력팀
 - 전 화 : (02) 2183-5835, 5898
 - E-mail : ip_care@koipa.re.kr
 - 주 소 : (06133)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
 -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 : www.koipa.re.kr